



: 2017-09-25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507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공단
피고, 피항소인 1. ■■■광역시 ■■■구청장
 2. ■■■시장
 3. ■■■시장
 4. ■■■시장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구단10803 판결
변 론 종 결 2017. 6. 15.(피고 1. 3. 4.에 대하여)
 2017. 7. 20.(피고 2.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17. 8.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시장이 2015. 7. 7. 원고에 대하여 한,
가. ■■■시 ■■■동 ■■■지상 덕암급전구분소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 300,780원,



나. ■■■시 ■■■면 ■■■리 ■■■지상 변전소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 157,940원,
다. ■■■시 ■■■면 ■■■리 ■■■지상 변전소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 2,118,890원,
라. ■■■시 ■■■면 ■■■리 ■■■지상 변전소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 171,920원의
부과처분¹⁾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시장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광역시 ■■■구청장, ■■■시장, ■■■시장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6/10은 원고가, 나머지 4/10은 피고 ■■■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광역시 ■■■구청장, ■■■시장, ■■■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청구취지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일에 별지 1. 청구취지 목록 기재 각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항소심 심판범위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일에 별지 2. 항소심 심판범위 목록 기재 각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별지 1. 청구취지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 중 재산세(도

1) 별지 1. 청구취지 목록 및 별지 2. 항소심 심판범위 목록 순번 3, 5, 8, 9 기재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이다.



시지역분 포함),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만이 자신의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인 별지 1. 청구취지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 중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 부분(별지 2. 항소심 심판범위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과 같다)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이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광역시 []구청장의 처분 경위

1) 원고는 []고속철도사업의 일환으로 []구 []동 [] 등 토지 지상에 []역사(연면적 24,847㎡)를 건축하였고, 2015. 2. 16.경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그 후 []역사 중 197.6㎡를 스낵코너, 커피숍, 제과점, 편의점으로 임대하였다.

3) 피고 []광역시 []구청장은 과세기준일 2015. 6. 1. 현재 원고가 []역사를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역사 중 임대부분 197.6㎡에 대하여 별지 1. 청구취지 목록 및 별지 2. 항소심 심판범위 목록(이하 '별지 1. 청구취지 목록 및 별지 2. 항소심 심판범위 목록'을 통칭하여 '별지 목록'이라 한다) 순번 2 기재와 같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 []시장의 처분 경위

1) 원고는 []복선 전철화 사업의 일환으로 별지 목록 순번 3, 5, 8, 9 기재



변전소 등 각 철도시설을 건설하였고, 2011. 2. 9. 또는 2011. 9. 22. 각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았다(한편,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는 별지 목록 순번 6, 10 기재 각 철도시설도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redacted] 복선화 사업의 일환으로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redacted] 역사를 건축하였고, 2009. 12. 9.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았다.

3) 피고 [redacted] 시장은 과세기준일 2015. 6. 1. 현재 원고가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6, 8 내지 10 기재 역사 등 각 철도시설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6,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4)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6, 8, 9 기재 역사 등 각 철도시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9. 8.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순번 10 기재 철도시설에 관하여 2016. 3.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redacted] 시장의 처분 경위

1) 원고는 [redacted] 복선 전철화 사업의 일환으로 별지 목록 순번 11 내지 14 기재 각 역사를 건축하였고, 2009. 12. 11. 별지 목록 순번 11 기재 [redacted] 엑스포역사에 대하여, 2010. 8. 31. 별지 목록 순번 12, 13 기재 [redacted] 역사, [redacted] 역사에 대하여, 2011. 4. 5. 별지 목록 순번 14 기재 [redacted] 역사에 대하여 각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았다.

2) 피고 [redacted] 시장은 과세기준일 2015. 6. 1. 현재 원고가 별지 목록 순번 11 내지 14 기재 각 역사를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별지 목록 순번 1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3) 별지 목록 순번 11 기재 [redacted] 엑스포역사에 관하여 2016. 3. 3., 별지 목록 순번 12 내지 14 기재 [redacted]역사, [redacted]역사, [redacted]역사에 관하여 2016. 2. 17. [redacted]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redacted]시장의 처분 경위

1) 원고는 [redacted] 복선 전철화 사업의 일환으로 별지 목록 순번 15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4. 12. 18.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4. 12.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redacted]시장은 과세기준일 2015. 6. 1. 현재 원고가 별지 목록 순번 15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별지 목록 순번 15 기재와 같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처분[이하 피고들의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6, 8 내지 15 기재 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처분(별지 2. 항소심 심판범위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이다)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 을라 제4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별지 2. 항소심 심판대상 목록 과세대상란 기재 각 철도시설은 원고가 별지 2. 항소심 심판대상 목록 사업명란 기재 각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 2015. 6. 1. 이전에 이미 해당 단위사업이 끝나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아 공용이 개시되었으므로,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의 소유자 명목과 관계없이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 2015. 6. 1. 현재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원고가 소유자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2. 항소심 심판대상 목록 과세대상란 기재 각 철도 시설과 관련된 철도건설사업, 단위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 준공 고시일, 준공 전 사용허가일이 아래 표와 같은 사실, 아래 표 사업명란 기재 각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원고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별지 목록 순번 6, 10 기재 각 철도시설도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 고시(갑 제8호증의 5),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관한 준공 고시(갑 제9호증의 4)에 별지 목록 순번 6, 10 기재 각 철도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달리 별지 목록 순번 6, 10 기재 각 철도시설이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순번 ²⁾	처분청	과세대상	사업명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	준공 고시일	준공 전 사용허가일
2	피고 구청청장	구 동 역사 중 임대부분	고속철도 역사 건설사업	2013-06-26	2017-01-06	2015-02-16

2) 편의상 별지 1. 청구취지 목록 기재 순번을 그대로 기재한다.



3			■■■■선 복선 전철화	2005-08-01	2013-01-16	2011-02-09 2011-09-22
4			■■■■ 복선화	2004-10-08	2015-09-30	2009-12-09
5		순	■■■■선 복선 전철화	2005-08-01	2013-01-16	2011-02-09 2011-09-22
6	피고 ■■■■시장	순	확인 안 됨			
8		순	■■■■선 복선 전철화	2005-08-01	2013-01-16	2011-02-09 2011-09-22
9		순	■■■■선 복선 전철화	2005-08-01	2013-01-16	2011-02-09 2011-09-22
10		순	확인 안 됨			
11			■■■■복선 전철화	2004-10-08	2015-09-16	2009-12-11
12	피고 ■■■■시장	여	■■■■복선 전철화	2004-10-08	2015-09-16	2010-08-31
13		여	■■■■복선 전철화	2004-10-08	2015-09-16	2010-08-31
14			■■■■복선 전철화	2004-10-08	2015-09-16	2011-04-05
15	피고 ■■■■시장		■■■■복선 전철화	2011-12-19	미준공	미허가 (2015. 10경 철거)

나. 판단

1) 관계법령의 검토 및 관련 법리

가)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142조, 제143조, 제147조, 제114조에 따르면, 철도시설 등 특정부동산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당시 특정부동



산의 소유자이다.

나) 철도시설의 국가 귀속 시기

철도건설법 제17조 제1항은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고, 철도건설법 제17조 제3항은 '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경우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은 '국가는 제7조에 따라 공단이 건설한 철도시설과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이하 '자산'이라 한다)와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 등의 의무(이하 '부채'라 한다)를 각 사업이 끝나는 때에 포괄하여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사업시행자인 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한 철도시설의 국가 귀속 시기에 관하여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이 적용됨이 명백하나, 원고가 사업시행자인 그 외의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한 철도시설의 국가 귀속 시기에 관하여는 철도건설법 제17조 제1항,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살피건대 철도건설법 제17조 제1항은 철도건설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전반의 국가 귀속 시기에 관한 일반규정이라고 할 것임³⁾에 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은 원고가 건설한 철도시설 등의 국가 귀속 시기에 관한 규정으로서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의 포괄승계도 규정하고 있어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은 철도건설법 제17조 제1항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사업시행자인 고속철

3) 철도건설법 제8조는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원고 외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예정하고 있다.



도건설사업 외의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한 철도시설의 국가 귀속 시기에 관하여도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국가 귀속 시기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 제3항,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원고가 사업시행자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한 철도시설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되는 날 국가가 이를 포괄승계하여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0769 판결 등 참조).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이나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국토계획법이나 도시정비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22419 판결⁴⁾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에 따라 별지 2. 항소심 심판대상 목록 과세대상란 기재 각 철도시설을 건설하여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아 그 철도시설이 실제로 그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다면,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날 공용이 개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별지 목록 순번 6, 10, 15 기재 각 철도시설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

4) 도로의 공용개시행위에 관한 판결이나,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인 철도시설의 경우에도 그 취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록 순번 6, 10, 15 기재 각 철도시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 2015. 6. 1. 현재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원고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실, 별지 목록 순번 6, 10 기재 각 철도시설에 관한 철도건설사업, 준공 고시일, 준공 전 사용허가일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 과세기준일 2015. 6. 1. 현재 별지 목록 순번 15 기재 건물에 관한 철도건설사업(익산-대야 복선 전철화 사업)의 준공 고시가 되지 않았고, 별지 목록 순번 15 기재 건물을 철도시설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2015. 10.경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목록 순번 6, 10, 15 기재 각 철도시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 2015. 6. 1. 현재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목록 순번 6, 10, 15 기재 각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5, 8, 9, 11 내지 14 기재 각 철도시설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5, 8, 9, 11 내지 14 기재 각 철도시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 2015. 6. 1. 현재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원고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실, ② 별지 목록 순번 3, 5, 8, 9 기재 각 철도시설에 관한 철도사업의 준공 고시일(2013. 1. 16.)과 준공 전 사용허가일(2011. 2. 9. 또는 2011. 9. 22.) 모두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 2015. 6. 1.보다 앞선 사실, ③ 별지 목록 순번 2, 4, 11 내지 14 기재 각 철도시설에 관한 준공 전 사용허가일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 2015. 6. 1.보다 앞서지만, 그 철도시설의 준공 고시일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 2015. 6. 1.보다 늦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우선 별지 목록 순번 3, 5, 8, 9 기재 각 철도시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



세기준일 2015. 6. 1. 이전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되어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으로서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 목록 순번 3, 5, 8, 9 기재 각 철도시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 2015. 6. 1. 현재 국가에 귀속되어 원고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목록 순번 3, 5, 8, 9 기재 각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그러나 별지 목록 순번 2, 4, 11 내지 14 기재 각 철도시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 2015. 6. 1. 현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이 끝나지 아니하여,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아 공용이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별지 목록 순번 2, 4, 11 내지 14 기재 각 철도시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 2015. 6. 1. 현재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목록 순번 2, 4, 11 내지 14 기재 각 지역자원 시설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라) 한편, 설령 원고가 사업시행자인 고속철도건설사업 외의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한 철도시설의 국가 귀속 시기에 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이 아닌 철도건설법 제17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철도건설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준공'은 개별 철도시설의 준공이 아닌 철도건설사업의 준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공용 개시일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이 끝난 준공 고시일보다 앞선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5, 8, 9, 11 내지 14 기재 각 철도시설에 관하여는 철도건설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국가 귀속 시기와 한국철



도시설공단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국가 귀속 시기가 같게 되므로, 앞서의 판단과 차이가 없게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별지 목록 순번 3, 5, 8, 9 기재 각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고, 나머지 별지 목록 순번 2, 4, 6, 10 내지 15 기재 각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 시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며, 피고 ■■■■광역시 ■■■■구청장, ■■■■시장, ■■■■시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피고 ■■■■ 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 시장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 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3, 5, 8, 9 기재 각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피고 ■■■■ 시장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광역시 ■■■■구청장, ■■■■시장, ■■■■시장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광역시 ■■■■구청장, ■■■■시장, ■■■■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한



.
.
: 2017-09-25

판사 최현정

판사 한종환



: 2017-09-25

1. 청구취지 목록

순번	처분청	과세대상	사업명	과세처분일	세목	과세액 (원)
1			[redacted] 고속철도사업	2015-07-28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9,690
					지방교육세	1,240
2	피고 [redacted] 구청장		[redacted] 고속철도사업	2015-07-28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822,250
					지역자원시설세	5,945,020
					지방교육세	52,830
3			[redacted] 복선 전철화	2015-07-07	재산세 도시지역분	383,230
					지역자원시설세	300,780
4			[redacted] 복선화	2015-07-07	재산세 도시지역분	3,951,020
					지역자원시설세	6,717,780
5			[redacted] 전철화	2015-07-07	지역자원시설세	157,940
6	피고 [redacted] 시장		[redacted] 복선 전철화(원고 주장)	2015-07-07	지역자원시설세	108,270
7			[redacted] 복선 전철화	2015-07-07	재산세 도시지역분	9,570
8			[redacted] 복선 전철화	2015-07-07	지역자원시설세	2,118,890
9			[redacted] 복선 전철화	2015-07-07	재산세 도시지역분	232,890
					지역자원시설세	171,920
10			[redacted] 복선 전철화(원고 주장)	2015-07-07	지역자원시설세	10,510



: 2017-09-25

11			[redacted] 복선 전철화	2015-07-10	재산세 도시지역분	2,479,120
					지역자원시설세	4,222,230
12	피고 [redacted] 시장	[redacted]	[redacted] 복선 전철화	2015-07-10	지역자원시설세	177,340
13		[redacted]	[redacted] 복선 전철화	2015-07-10	지역자원시설세	330,820
14		[redacted]	[redacted] 복선 전철화	2015-07-10	지역자원시설세	243,570
15	피고 [redacted] 시장	[redacted]	[redacted] 복선 전철화	2015-07-07	재산세 도시지역분	67,580
					지역자원시설세	176,320
합계						31,690,810



2. 항소심 심판범위 목록5)

순번 ⁶⁾	처분청	과세대상	사업명	과세처분일	세목	과세액 (원)	
2	피고 구청장	[Redacted]	고속철도사업	2015-07-28	지역자원시설세	5,945,020	
3			선 복선 전철화	2015-07-07	지역자원시설세	300,780	
4			복선화	2015-07-07	지역자원시설세	6,717,780	
5			선 복선 전철화	2015-07-07	지역자원시설세	157,940	
6	피고 시장		전철화(원고 주장)	2015-07-07	지역자원시설세	108,270	
8			선 복선 전철화	2015-07-07	지역자원시설세	2,118,890	
9			선 복선 전철화	2015-07-07	지역자원시설세	171,920	
10			선 복선 전철화(원고 주장)	2015-07-07	지역자원시설세	10,510	
11			선 복선 전철화	2015-07-10	지역자원시설세	4,222,230	
12	피고 시장		선 복선 전철화	2015-07-10	지역자원시설세	177,340	
13			선 복선 전철화	2015-07-10	지역자원시설세	330,820	
14			선 복선 전철화	2015-07-10	지역자원시설세	243,570	
15	피고 시장		선 복선 전철화	2015-07-07	지역자원시설세	176,320	
합계						20,681,390	

5)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추가 인용되는 부분은 음영 표시 하였다.

6) 편의상 별지 1. 청구취지 목록 기재 순번을 그대로 기재한다.



3.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제147조(부과·징수)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 구 철도건설법(2015. 8. 11. 법률 제134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6.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 라.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 2017-09-25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철도의 건설,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전철화 및 복선화, 철도차량기지의 건설과 철도역 시설의 신설·개량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

나. 제6호 각 목에 따른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군사시설 또는 공용 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 철도건설법

제8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 ① 철도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 ① 제8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의 귀속 등)

- ①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7-09-2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고속철도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는 그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③ 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경우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유치 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산정 방법 및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2.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3.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관리 및 지원
4. 철도시설 건설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운영
5.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사업
6.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
7.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제24조(자산·부채의 승계 등)

- ① 국가는 제7조에 따라 공단이 건설한 철도시설과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이하 "자산"이라 한다)와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 등의 의무(이하 "부채"라 한다)를 각 사업이 끝나는 때에 포괄하여 승계한다. 다만, 공단이 국가로부터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철도시설과 직접 관련된 부채는 국가가 승계하지 아니한다.
-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를 인계하려면 인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는 시기와 승계할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 2017-09-25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제25조(자산·부채의 승계 등)

- ① 법 제24조 제1항 본문에서 "각 사업"이란 「철도건설법」,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그 밖에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단위사업을 말한다.
- ② 공단이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인계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계자산의 범위 및 목록
 2. 인계자산 및 부채의 가액
 3. 그 밖에 인계에 필요한 서류
- ③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승계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公用)이 개시되는 날로 한다.